

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추진계획

- ❖ 소방산업체 마케팅지원 및 소방산업 진흥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한 「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」 계획임
 - ☞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

□ 추진목적

- 소방산업 수요(소방용품·공사)조사 공개를 통한 소방산업 활성화
- 소방산업체의 계획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 제공
-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조사대상기관의 기관별·분기별·소방사업 분야별 투자 예산 동향 분석 및 소방산업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

□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'17. 7 ~ 12월(6개월) ※ 예산 : 70,000천원(소방산업기술원)
- 조사대상 : 정부 및 공공기관*(공공부문), 종합건설사**(건설업부문)
 - *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
 - * 「'17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(대한건설협회)」에 의한 도급순위 상위 50개사
- 조사내용 : '18년도 소방장비·용품 구입 및 소방시설 공사·관리 계획 등
- 조사방법 : 수요·통계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분석 능력·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(기업)에 위탁 용역

위탁용역 개요

- ❖ 사업명 : 「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연구용역」
- ❖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0일(휴일포함)
- ❖ 소요예산 : 70,000천원
- ❖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(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' 제43조)

□ 추진일정

- 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추진계획 수립 6월
- 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(기술원) 6월
-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 7월 ~ 8월
- 조사대상 모집단 확정 9월
- 수요조사 및 결과분석(분석자료 사전제출 12. 7限) 10월 ~ 12월
- 최종보고회 및 수요조사집 발간 '18. 1월

□ 기대효과

- 차기년도 소방장비 수요 등 정보수집·공개로 소방산업체 계획생산, 영업활동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활성화 및 진흥기반 마련
- 영업능력이 부족한 소방산업체에 국가기관 등의 소방분야 예산 조사결과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소방산업 마케팅 활성화
- 소방산업체의 우수품질 소방용품 생산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소방산업체 판로 개척 지원 및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

□ 행정사항

- 소방산업기술원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조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, 업체선정, 착수보고회 등 업무추진 시 사전에 국민안전처(소방산업과)와 사전협의 바람 * 진행사항 보고철저

※ 붙임 : 수요조사 세부 추진절차 1부. 끝.

추진 절차	일정	주요 추진사항
추진계획 수립	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추진 계획」 수립 ☞ 추진일정 및 방법, 과업내용 등
↓		
용역업체 선정	7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역업체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개최 ※ 재무회계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
↓		
착수보고회	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착수보고회 개최 ※ 용역사 및 업무관계자 등 ☞ 과업 수행일정 발표 및 추진 보완사항 검토
↓		
조사대상 모집단 확정	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대상 기관(건설사) DB정리 ☞ 모집단내 수요조사 담당자 DB확보
↓		
수요조사 실시	10월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실시 ☞ 조사참여 협조공문 발송 등 ※ 국민안전처 협조 추진
↓		
조사결과 분석	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내용 분석 및 결과작성 ☞ 각종 현황 통계학적 분석 및 결과도출
↓		
최종보고회	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업 최종결과물에 대한 보고회 ☞ 2018년 소방산업 수요조사 결과 발표
↓		
조사집 배포	'18 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요조사 결과집 작성, 배포 및 홍보 ☞ 소방산업체, 유관기관(단체) 등

※ 위 과업수행 일정은 용역사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